

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29.

도시환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
- 제출자: 도하석 의원 등 10명(황국주, 이선주, 남현주, 정순옥, 정창근, 박종길, 박정환, 김장관, 김기열)
- 제출일자: 2024. 11. 6.
- 회부일자: 2024. 11. 6.
- 상정 및 의결: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(2024. 11. 29.)

2. 제안이유

-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해지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,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재난도우미 운영 근거 규정 마련(안 제6조)

-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무더위쉼터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7조, 제8조)
-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, 제10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, 제4조
 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, 제3조, 제33조의2
 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24조의2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4. 11. 6.~11. 17.)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지원을 위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·시행과 폭염 실태조사, 재난도우미 운영, 취약계층 지원, 무더위 쉼터 운영, 안전교육,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2018년 9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을 통하여 폭염이 재난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“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

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.
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의 적극적인 예방 및 피해 대응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국민의 폭염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관계법령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